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·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강경숙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7648

발의연월일: 2025. 1. 20.

발 의 자:강경숙·김준형·정춘생

김문수 · 김준혁 · 박은정

백승아 · 장종태 · 황운하

문정복 • 정을호 • 서왕진

신장식 · 김선민 의원

(14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일본군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인하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할 목적으로 평화의 소녀상 등 피해자를 기리는 기념물을 훼손하 거나 오욕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.

하지만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보호 및 관리 조치가 미흡할뿐만 아 니라 실태 조사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. 2024년 9월, 정부에 서 현황 파악을 위해 전국 '평화의 소녀상' 실태 파악에 처음으로 나 선만큼 정부가 향후 보호 및 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함.

이에 국가가 국내외에 설치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조형물 또는 상징물의 실태를 파악하고 존치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여 일본군위 안부 피해자의 존엄과 명예를 회복하고 올바른 역사인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2조의2제4항 신설).

법률 제 호

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·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·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의2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국가는 국내외에 설치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기억하기 위한 조형물 또는 상징물(이하 "조형물등"이라 한다)의 실태를 파악하고, 조형물등의 존치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	행			개 정 안
제2조의2(국가의	의무)	① ~	3	제2조의2(국가의 의무) ① ~ ③
(생 략)				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			④ 국가는 국내외에 설치된 일
				본군위안부 피해자를 기억하기
				위한 조형물 또는 상징물(이하
				"조형물등"이라 한다)의 실태를
				파악하고, 조형물등의 존치를
				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.